

##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5
----------	-----

1998. 4. 01  
제출년월일 : 1998년 3월 일  
제출자 : 서초구청장

### □ 제안이유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허세 감면 대상에서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기존의 면제 대상 자동차 범위의 확대로 구체인 면허세를 감면하여 복지사회 증진을 위해 서초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 주요골자

1.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도 면허세 감면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2. 기존의 면제 대상 자동차 범위의 확대
  - 자동차를 국가유공자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의 당해 자동차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지방세법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면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의 : 내무부 세제13400-37 ('98. 2. 12)호에 의거  
    서울시 세정13400-207('98. 3. 9)호로 개정조례안 시달됨.
- 라. 기타 : 없음.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신설한다.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②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이하 "국가유공자"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를 국가유공자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 하는 경우의 당해 자동차

2.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동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매매용자동차, 다만, 제시한 매매용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에게 반환되거나 국가유공자등에게 이전등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5.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b></p> <p>(2) 국가유공자등에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b>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b></p> <p>(2).....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준의 면제 대상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 자동차</li> <li>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li> <li>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li> <li>4. 이륜자동차</li> </ul>

현      行	개      정      安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제시한 사실이 증명 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삭제>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 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삭제>
<신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소유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를 국가유공자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의 당해 자동차

현    영	개    정    안
	<p>2.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동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매매용자동차, 다만, 제시한 매매용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에게 반환되거나 국가유공자등에게 이전등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3.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p> <p>4.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p> <p>5.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p>

## 면 허 세 감 면 현 황

- 관련조항 : 서울특별시 구세 감면조례 제2조(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 기존 감면대상 : 승용 및 이륜자동차
- 추가 감면대상 : 생업활동용 자동차
  - 승차정원 15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자동차를 국가유공자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 등록하는 경우의 당해 자동차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감면 현황

(단위 : 건/천원)

세 목	계		1998		1997		199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면허세	373	11,662	177	4,779	100	3,465	96	3,418

- 추가감면예상 : 미 상

※서초구 등록현황  승합자동차 : 6,160대  
 화물자동차 : 11,975대

<참고> 내무부세제 13400-37('98. 2. 12) 및  
 서울시세정 13400-207('98. 3. 9)호와 관련